

「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」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

「경기도 식품안전 조례」 제19조 및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「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」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9일

경 기 도 지 사

1. 위탁개요

- 사 업 명 :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6. 8. 8. ~ 2028. 12. 31. (약 2년 5개월)
- 사 업 비 : 연간 약 500,000천원 (도비 100%) ※ 위탁수수료(2%) 포함
 - 2026년 총 사업비 : 506,470천원
 - '26.8.8~'26.12.31. 사업비 : 약 206,570천원
- 위탁사무 주요내용 (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제18조)
 - 식품안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
 -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업무
 - 식품관련 영업소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업무
 - 도민 대상 식품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
 -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교육에 관한 업무
 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2.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인력 기준

○ 인원 : 6명 (단장 1, 팀장 1, 연구원 3, 행정원 1)

구 분	자격조건 및 근무형태	비고
지원단장 (1명)	○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지휘·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- 식품 관련 학과 대학 조교수 -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근무형태 : 비상근 근무(주1일 8시간 이상 근무)	
팀장 (책임연구원) (1명)	○ 지원단장을 보조하는 자	기존 인력 고용 승계
연구원 (2명)	○ 대학 연구원 수준의 기능 보유자	기존 인력 고용 승계
연구원 (1명)	○ 대학 연구원 수준의 기능 보유자	기존 인력 고용 승계
행정원 (1명)	○ 행정적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자	기존 인력 고용 승계

3.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

가. 신청자격

- 식품안전 관련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- 식품안전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, 단체

나. 위탁조건

- 경기도 식품안전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(조직, 인력, 예산 및 회계, 사업내용 등)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- 수탁기관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수탁 권한을 다른 기관·법인·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·위탁할 수 없음
- 수탁재산을 지원단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, 대여, 매매 및 교환할 수 없음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
-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항 준수
- 위·수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계약 체결

4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공고기간 : 2026. 5. 29.(금) ~ 2026. 6. 8.(월) (11일간)
- 접수기간 : 2026. 5. 29.(금) ~ 2026. 6. 8.(월) (11일간)
 - ※ 공고기간 10일 기준 만료일 6.7.(일)이 공휴일 해당하여 익일인 6.8.(월)까지로 설정
- 접수장소 : 경기도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
 -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18층 / ☎ 031-8008-3674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 및 이메일, 택배 접수 불가)
 - ※ 접수기간 내 09:00~18:00까지 제출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/ 주말·공휴일 접수 불가)
- 제출서류 :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,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 “경기도청 홈페이지(www.gg.go.kr) > 뉴스 > 공고·입법예고 > 고시·공고”

5. 제출서류

- 수 량 : 총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 및 파일
- 규 격 : A4 사이즈 1권의 책자로 제본(목차, 쪽번호 명시, 좌 편철)
 - ※ 원본(1부)을 제외한 사본(9부)의 경우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(마스킹 처리)하여 제출

○ 제출서류 목록

연번	내용	비고
1	수탁신청서	[서식 1]
2	신청기관 현황	[서식 2]
3	법인설립 허가증 사본	-
4	법인정관 사본	-
5	법인인감증명서	-
6	법인 등기부등본	-
7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-
8	식품안전 관련 업무 수행 실적 (최근 5년)	[서식 3]
9	최근 5년 이내 경기도 수탁사무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	[서식 4]
10	단장(예정자)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	[서식 5]
11	사업계획서	[서식 6]
12	서약서	[서식 7]
13	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협약서	[서식 8]
14	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	[서식 9]
1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[서식 10]
16	안전보건관리 협약서	[서식 11]
17	사용인감계	[서식 12]
18	위임장	[서식 13]
19	발표자료(PPT 파일, USB 저장)	

6.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

- 선정방법 :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2조 규정 의거 「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에서 심사 후 선정
- 심사일시/장소 : 2026. 6월(예정) ※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

○ 심사절차

- 발표순서 :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
- 참석인원 : 기관별 제안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
- 발표자료 : PPT로 준비 (발표자료 10부 당일 제출)
 - ※ PPT 파일 심의 3일 전까지 메일 발송(grand01@gg.go.kr) 및 당일 USB 지참
- 시간배분 : 기관별 제안설명 15분,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진행

○ 심사기준

구분		평가항목	배점
합 계			100
정량 평가 (25점)	기관역량 및 수행실적 (25점)	○ 수탁기관 역량 및 공신력 - 기관 조직 구성·규모 및 재정 안정성 - 기관 설립 목적과 위탁사무와의 부합성 및 사회적 신뢰도	10
		○ 식품안전 분야 수행 실적 - 식품안전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(최근 5년)	15
정성 평가 (75점)	단장 리더십 (10점)	○ 단장(예정자)의 전문성 및 지원단 운영 리더십 - 식품안전·식품위생 분야 전문성 (학력·경력·자격 등) - 경기도 식품안전 정책 이해도 - 지원단 총괄 운영 역량 및 추진의지	10
	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(15점)	○ 사업목표·기대효과 및 중장기 발전 방향 - 경기도 식품안전 정책방향에 부합한 목표 설정과 운영 비전 - 도민 식품안전 증진을 위한 구체성 및 성과지표·환류 계획 - 지원단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	15
	사업 계획 (30점)	○ 위탁사무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- 경기도형 식품안전 연구 및 정책 개발·교육홍보 등 추진계획 - 식품안전 포럼·컨퍼런스 등 도민 식품안전 대응역량 향상 사업계획	30
	추진체계 및 예산편성 (10점)	○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편성의 타당성 - 추진일정·역할분담·수행방법론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- 위탁사무 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항목별 배분의 합리성	10
	협력 체계 (10점)	○ 식품안전 유관기관 및 시·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역량 -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- 시·군 지원·연계 역량 및 식품안전 전문가 풀 운영계획 등	10

○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

- 심사결과 평정점수 중 최고·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*하고 합산하여 산술한 평균값**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

*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

**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)

-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‘위탁사무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’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
-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
- 기타 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
-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

*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

○ 결정통지 :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 공고 및 개별 통보

7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이후 열·공람 및 변경·추가할 수 없음
 - ※ 단, 경기도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·보완 서류 제출
-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함
- 신청기관은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
- 선정심의를 따른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
- 본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」 등 관계법령 및 경기도 조례,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, 경기도지사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
- 위·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·개정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·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
- 신청접수 현황,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현황, 심의내용,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 - ※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함
-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
- 수탁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에 따라 의무 미이행 시 계약해지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
-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, 「경기도 민간위탁·대행 관리 매뉴얼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따름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
-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별도로 위·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며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관련 문의 : 경기도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(☎ 031-8008-3674)

붙임 : 민간위탁 제출서류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.